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5월 ~ 6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분석한 결과 대만, 라벨, 규정, 마가린, 버터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대만, 라벨, 규정, 마가린, 버터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4.10.28
대만 위생부,
식품 이력 추적 시스템
설립 계획 발표

2015. 07. 31
영유아용 및
질병용 조제식
라벨링 규정 강화

2016. 07. 01
건강 기능 식품의
효능 및 성분
표시 규정 강화



핵심이슈
도출

위생부 식품약품관리서, 버터, 마가린, 커피 크림 등에 대한 라벨 규정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위생부 식품약품관리서, 버터, 마가린, 커피 크림 등에 대한 라벨 규정 발표

대만 위생부 식품약품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가 2017년 7월 1일부터 버터, 마가린, 커피 크림 등에 대한 라벨 규정인 <버터, 유지방, 마가린 제품의 라벨 표시 규정> 및 <커피 크림 제품의 라벨 표시 규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제품 생산 날짜 기준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생산된 제품부터 해당되며, 규정 위반 시 최대 400만 대만달러(약 1억 4,77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제품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버터, 마가린, 커피 크림 제품에 대한 라벨 표시 규정>

품목	라벨 표시 규정
버터·마가린	- 유지방 함유량이 80% 이상인 제품만 버터(奶油)로 표기할 수 있음 - 유지방 함유량이 10~80% 미만인 제품은 생크림(鮮奶油), 유지(乳脂), 식용유지(食用乳油), 생유제(鮮乳油)로 표기할 수 있음 - 마가린 제품에 대해서는 '식물성 버터(植物性奶油)'라고 표기할 수 없음
커피 크림	- 유지방 미함유 시, 제품명 뒤에 '유지방 미함유'로 표기하도록 규정 - 유지방 함유량이 50%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지방 위주로 하지 않음'으로 표기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대만은 지난 2015년부터 자국민의 건강 및 권익 보호 차원으로 식품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오고 있다. 당시 대만 정부는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 원산지 증명서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배 이상의 처벌 강도를 높여 국내·외간 식품 관련 업체들의 긴장을 높였다. 이번에 발표된 라벨 규정 또한 이에 대한 연장 선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 품목들에 대해 대만 수출 시 기업 자체적인 라벨링 표기 확인을 통해 통관 및 검역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식품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감 확보로 대만 소비자들을 확보할 것을 조언하는 바이다.

버터, 마가린, 커피 크림 등에 대한 라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ieatpe.org.tw/nboard/view.asp?ID=7237>

1. 台湾食品安全新规定,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7.07.13
2. 台湾地区发布《市售奶油、乳脂、人造奶油与脂肪抹酱之品名及标示规定》, foodmate, 2017.02.06